

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3. . .
발 의 자	이지연 의원 외 6명

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지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: 2023. . . .
발 의 자: 이지연 · 김영태 · 박세채 · 신용하
양진오 · 이상호 · 추은희 의원(7명)

1. 제안이유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계획 수립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- 라. 도시농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13조)
- 마. 우수사례 발굴 및 준용 규정(안 제14조~제16조)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시농업”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.
2. “도시지역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.
3. “도시농업인”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.
4. “도시농업공동체”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,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7조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.
5. “도시농업 공영농장”이란 구미시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도시농업의 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곳을 말한다.
6. “도시텃밭”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희지, 자투리땅, 공원, 녹지,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.

7. “상자텃밭”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위해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.

8. “교육텃밭”이란 어린이집,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,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는 도시농업 활동에 이용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.

1.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
2.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
3. 도시농업인 및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
4.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
5.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)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, 단체 및 기관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
2.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개설 및 운영
3.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
4.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
5.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사업
6. 교육텃밭의 조성 및 보급사업
7.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
8.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임대) 시장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농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
3. 도시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

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눈다.

1. 당연직: 농업기술센터 소장

2.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가. 도시농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

나. 구미시의원

다. 시민단체 및 농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
라.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구미시 소속 공무원

마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

3.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
제11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수당)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) ① 시장은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한 도시농업인에게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② 우수사례의 확산·전파를 위해 제1항에서 발굴된 사례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도시농업 공영농장의 적용례)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된 도시농업 공영농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관계법령

□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·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,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.

제14조(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미리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(이하 “개설승인권자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

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

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

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, 업무

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9조(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임대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③ 생략

구미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도시농업 텃밭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합니다.

4. 작성자

- 농촌지원과 생활자원담당 홍수진(☎4243)